

제설기관 공조체계구축 협약서

□ 협약대상자

1. 강서도로사업소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 02-2657-7952)

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성 명 :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 (인)

2. 서부도로사업소

주 소 : 서울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 02-300-8359)

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성 명 : 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 (인)

□ 협약내용

제1조(목적)

겨울철 폭설로 인한 자치단체간 경계지역 제설작업 지연시 지방자치 단체간 제설작업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폭설로 인한 시민의 도로교통 불편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제설대책기간 (2018.11.15 ~ 2019. 3.15)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협약내용)

- 1) “강서도로사업소”와 “서부도로사업소”는 겨울철 강설시 제설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로 협조하므로서 시민의 교통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 “강서도로사업소”와 “서부도로사업소”는 다음 지역의 제설작업 시행시 먼저 작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경계구간으로 설정된 구간(제설작업 협조구간)의 제설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3) 위 제설작업에 투입된 인력, 장비, 자재 등 비용은 투입기관의 지역 주민에 대한 투자비용으로 보아 정산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4) “강서도로사업소”와 “서부도로사업소” 지역의 경계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제4조(안전사고)

“강서도로사업소”와 “서부도로사업소”는 상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제설작업중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설작업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상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조(제설작업에 대한 책임)

“강서도로사업소”와 “서부도로사업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상대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제설작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협조 미흡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부 칙 “강서도로사업소”와 “서부도로사업소”는 본 협약서를 2부 작성 날인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경계구간 설정 내역

[경계구간 설정 내역] 경계지점 _____ 경계구간

노 선 명	경계지점	경계구간	비 고
가양대교	가양대교 끝	가양대교 교량끝 기준 양측 100m	

- 위치도

